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2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김예지·안상훈·서명옥

김선교 · 김소희 · 서천호

강대식 • 박덕흠 • 정성국

최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충격요법(Electroshock Therapy)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비약물적, 생물학적 치료요법으로 효과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여러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, 국내에서도 중증 우울증 치료요법으로 전기충격요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해당 치료법은 안면과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약한 수축이 일어 날 뿐이지만, 현행법에서는 '전기충격요법(Electroshock Therapy)'으로 표현하고 있어, 환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.

이에 '전기충격요법'이라는 표현을 '되전기조율치료'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,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(안 제7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제1항 본문 중 "전기충격요법"을 "뇌전기조율치료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3조(특수치료의 제한) ① 정신	제73조(특수치료의 제한) ①
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	
대한 <u>전기충격요법</u> ·인슐린혼	<u>뇌전기조율치료</u>
수요법 • 마취하최면요법 • 정신	
외과요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치료(이하 "특수치	
료"라 한다)는 그 정신의료기관	
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	
하되,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	
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	
정보를 제공하고, 본인의 동의	
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본인의	
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	
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	
한다.	,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